

# 심사보고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3
----------	-----

2022. 11. 30.(수)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10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1월 23일

-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현재 우리 도 소속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에서 안전 처리 등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비(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거의 없어 비상설 형태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충청북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안 제1조)는 2021년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비상설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안 제2조)는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자문을 하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하기 위해 두고 있으나, 운영실적이 거의 없어 위원회가 비상설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임.
    - ※ 위원회 개최 횟수 2021년(1회), 2022년(없음)
  -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안 제3조)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두고 있으나, 자문 성경

이고 개최 횟수가 적어 비상설화 방안은 적절한 조치로 보임.

※ 위원회 개최 횟수 2021년(1회), 2022년(1회)

- 충청북도종자위원회(안 제4조)는 직무육성품종의 장려, 품종보호권 등의 처분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이 거의 없어 비상설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위원회 개최 횟수 2021년(1회), 2022년(없음)

- 충청북도특화작목육성위원회(안 제5조)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두고 있으나, 개최 횟수가 적어 안전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위원회 개최 횟수 2021년(1회), 2022년(1회)

-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자문위원회(안 제6조)는 천연물산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고 있으나, 개최 횟수가 적어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안전이 발생할 때마다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은 적절해 보임.

※ 위원회 개최 횟수 2021년(1회), 2022년(없음)

-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안 제7조)는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두고 있으나, 개최 횟수가 적어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필요시마다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위원회 개최 횟수 2021년(1회), 2022년(1회)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전 처리 등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정비(비상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  
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2조(「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미술품 보  
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3조(「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4조(「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8조제4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천연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구성) ① ~ ④ (생략)</p> <p><u>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제5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u></p>

충청북도 미술품 보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 위원회) ① ~ ③ (생략) <u>&lt;신설&gt;</u>	제7조(충청북도 미술품관리 자문 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 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 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 동으로 해산한다.</u>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략)</p> <p><u>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u></p> <p>1. <u>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p> <p>2. <u>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u></p> <p>3. <u>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의 위촉직 위원이 해당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u></p>	<p>제1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u></p> <p><u>&lt;삭 제&gt;</u></p>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p> <p>④ <u>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이 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u></p> <p><u>&lt;신 설&gt;</u></p> <p>⑤ <u>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1. ~ 5. (생 략)</p>	<p>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⑤ <u>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u></p> <p>④ <u>위원은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 ⑤ (생략)</p> <p><u>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7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p> <p><u>⑥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u></p>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위원회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② <u>당연직 위원</u>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p>
<p>제1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생략)</p> <p>② <u>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解囑)할 수 있다.</u></p>	<p>제1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 ④ (생략)</p> <p><u>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u></p> <p><u>⑥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u></p> <p>⑦ (생략)</p>	<p>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u></p> <p>⑤ (현행 제7항과 같음)</p>

## 관련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